

“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행복 대한민국”



보 도 자 료

“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”

- ▶ 보도일시: 2012.7.19 (목) 조간
- <인터넷 7. 18 (수) 12:00 이후>
- ▶ 총 3 쪽 (첨부포함)

❖ 인적자원개발과장 정 원 호
사무관 박 상 윤

☎ 02-2110-7266, 010-2551-8079

E-mail: room6332@gmail.com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생 학점인정 받기 쉬워진다

- 12.7월부터 직업훈련 41개 과정에 대하여 학점인정제 적용 실시

-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 훈련과정은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점인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졸 구직자나 재직자의 학점취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.

* 학점은행제: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이 설치·운영하는 학습 과정에 대해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

- 그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인정한 직업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만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
- 그러나 7월부터는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의 특성에 맞게 인정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용노동부가 직접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.
-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과정을 수료한 고졸 구직자 등의 학점인정이 확대될 전망이다.
- 이번 조치에 따라 7월 17일부터 개강하는 고용노동부 지원 41개 훈련과정*을 수강하는 고졸 구직자와 재직자는 수료시 최소

3학점에서 최대 21학점까지 학점을 인정받는다.

- * 구직자 대상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16개 과정, 재직자 대상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관련 훈련 25개 훈련과정

○ 금년 중으로 이들 훈련과정을 수강할 570여명 고졸 구직자와 재직자가 학점인정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.

- * 고졸 구직자 490명, 고졸 재직자 80명

- 9월에 고용노동부는 학점인정 훈련과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년에 개설될 훈련과정을 심사할 계획이다. 이를 통하여 2013년부터는 4천여명 이상의 고졸 구직자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.

- 특히, 고졸 재직자의 경우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실시되는 현장훈련의 경우도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어 '일과 학습을 병행'할 수 있게 된다.

- * 개별 기업에서 실시되는 현장훈련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

-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(박성희)은 “금번 학점은행제 절차 간소화는 열린 고용에 대한 정부 부처간의 협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며, 직업훈련의 학점인정이 보다 용이해짐으로써 '선취업-후학습'이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말했다.

< 별첨 >

1. 학점은행제 운영절차 변경 내용 요약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박상윤 사무관(☎ 02-2110-7266)에게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 별첨 >

□ 학점인정제란?

-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정규 교육훈련 수료자와 국가자격 취득자에게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

* 전문학사 80학점 이상, 학사 140학점 이상 취득 시 학위 부여

□ 학점인정제 운영절차 변경

○ 현행 운영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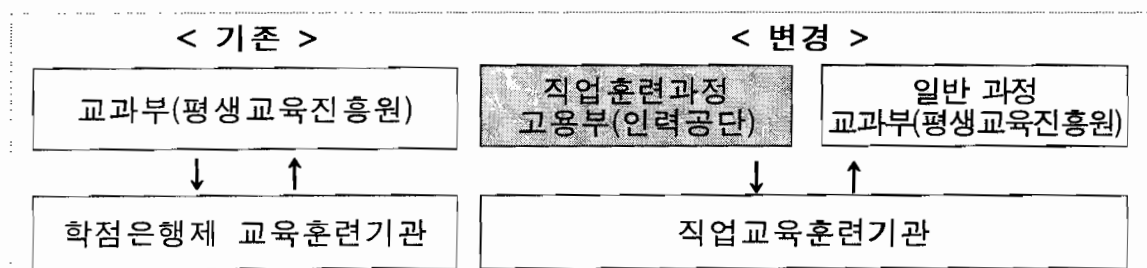
- 모든 학점인정제 관련 심사 및 운영이 교과부(평생교육진흥원)로 일원화되어 실시

* 「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기준」에서 규정된 대상기관·신청자격·학습과목·평가기준을 적용

○ 변경된 운영절차

- 현재 교과부로 일원화되어 있는 학점인정 심사절차를 고용부장관이 인정(승인)한 직업훈련과정은 직업훈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부(한국산업인력공단)에서 심사

* 고용부 지원 직업훈련과정의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 적용(산업현장 밀접성, 산업현장수요반영 등)



- 기업단위로 이루어지는 현장훈련(OJT)도 학점인정제에 포함

* '학점인정 직업훈련과정의 현장훈련 운영지침(고용부)'에 따라 운영·관리